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521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한정애 · 임오경 · 이학영
문진석 · 박희승 · 맹성규
조인철 · 허 영 · 권칠승
김 윤 · 서영석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발전소는 전환 또는 폐지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는 여전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발전소가 가동되는 등 감축 속도가 목표에 비해 더딘 상황임.

이에 따라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지하는 명확한 법적 목표를 설정하고,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조기 폐지를 이행하도록 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는 불가피하게 지역경제 침체, 노동자 일자리 상실, 주민 생활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함.

이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 노동자의 고용안정, 주민 복리 증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가속화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경제·노동자·주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정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를 목표로 하고, 공공부문 발전소는 2035년까지 선도적으로 폐지하도록 하며, 3년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공표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자발적 폐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고용 유지 및 전환계획, 지원조건 등을 협약에 포함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조기 폐지를 이행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 부여, 융자·세제 감면, 고용유지 시 REC 가중치 적용, 인프라 전환 활용 시 개발 부담 완화 등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7조).

마.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지역경제 영향평가, 대체산업 육성, 노동자 전환지원,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8조).

바. 폐지지역은 규제자유특구,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우선 지정될 수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지방교부세 및 국고 보조금 지원 비율 상향 등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정부는 폐지지역에 대하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투자 기업에는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업종 전환이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는 기업에는 자금 보조 또는 용자를 할 수 있음(안 제10조 및 제11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 대체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하고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대체산업이 지역주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우대 지원할 수 있음(안 제12조).

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함(안 제13조).

차.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여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노동자 고용안정, 대체산업 육성, 주민 생활 향상 등을 지원하며,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기여금도 기금 재원에 포함함(안 제14조).

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별로 지자체·주민대표·발전사업자·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 전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운용위원회 및 성과평가 제도를 두어 이행성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고, 그 과정에서 지역경제와 노동자 및 주민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운영하는 발전시설로서 석탄을 주된 연료로 이용하는 발전설비를 말한다.
2. “석탄화력발전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화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3.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란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수명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운영을 중지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것을 말한다.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하거나 소재하였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폐지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5.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6. “정의로운 전환”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을 말한다.

7. “대체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및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 및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을 따른다.

제2장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이행체계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목표) ① 정부는 2040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조기 폐지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 및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일정을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조기 폐지의 이행상황을 3년마다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공부문이 소유·운영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하여 현 발전용량을 보장하는 것을 전제로 2035년까지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 정부는 이를 법적·재정적으로 지원·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부문보다 우선적으로 조기 폐지 일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이행계획의 수립·시행 절차, 점검·공표 방법, 공공부문 석탄화력발전소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발전사업자와의 협약)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자발적 폐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폐지 대상 설비 및 일정
2. 고용 유지 및 전환 계획
3.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조건 및 방식
4. 석탄발전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산업과의 연계 계획 등

제7조(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정부는 조기 폐지를 이행하는 발전사업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폐지 설비용량에 비례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권의 부여
2. 사업전환을 위한 융자지원 및 세제 감면
3. 고용유지를 이행하는 발전사업자에 대한 일정 기간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적용
4. 기존 인프라 전환 활용 시 관련 개발부담 완화

제3장 정의로운 전환 및 지역 지원

제8조(기본계획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정의로운 전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조기 폐지 일정과 연계되도
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역경제 영향평가 및 지역재생 전략
2.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 계획
3. 노동자 전환지원 방안
4.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5.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정 및 특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조기 폐지 계획에 따라 폐지지역에는 관계 법률에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
른 규제자유특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
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산업
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우선 지정
2. 「국가재정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
3. 「지방교부세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
금 지원 비율의 상향

제10조(고용안정지원 등) ① 정부는 폐지지역에 대하여 「고용보협법」 제19조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우선 실시함에 있어 해당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업 시행에 필요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고용보조금의 지급 등) ① 정부는 폐지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지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폐지지역의 사업자가 업종 전환, 경영합리화를 추진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 전환 또는 경영합리화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또는 임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융자의 대상·범위·조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체산업의 육성) ① 정부는 폐지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대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노

동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책의 수립·시행 절차,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의제)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의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 설치)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이하 “지원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출연금
5.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6. 조기 폐지 발전사업자의 자발적 기여금

7. 지원기금의 운영으로 생긴 수익금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지원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다.

제15조(지원기금의 사용 및 관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를 위한 지원사업

2.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3.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사업

4.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의 생활 향상 지원사업

5. 지원기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6. 지원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② 지원기금은 해당 사업의 성격에 따라 보조금, 융자, 출자 또는 민관 공동참여 방식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③ 지원기금의 집행 및 배분은 공정성·투명성 및 효과성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지원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지원기금의 효율적 운용과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소속으로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이해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집행 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지역 전환 협의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별로 지방자치단체, 주민대표, 발전사업자, 석탄화력발전산업 노동자 대표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 전환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체는 자문기구로서 지역 맞춤형 계획의 수립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성과평가 및 보고)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지 및 기본계획의 이행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3년마다 그 이행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성과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반영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역별 감축 기여도는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

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